

김포시도시계획조례증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 | |
|---------------|--------------|------|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3월 17일 | 김포시장 |
| 나. 회부일자 | 2004년 3월 23일 | |
| 다. 상정일자 | 2004년 3월 23일 | |
| 라. 의결일자 | 2004년 3월 24일 | |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18240호. 2004.1.20)에 따라 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의 정도를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김포시도시계획조례증 경기도 법제사무처리규정 제20조에 의거 도시계획조례증 시정 권고 대상사항을 개정,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정에 따른 보칙, 도시계획조례증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 관련 조항에 대한 착오 조항을 개정하여 효율적이 도시계획업무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에 있어 시민의견 청취결과에 대하여 반영 여부 및 검토 의견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려야 하는 조항 신설(안 제5조제6항)
- 제2종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의 삭제와 제2종수변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해당 조항을 각각 삭제(안 제32조 내지 제35조)
- 보칙중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김포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자에 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름(안 제81조)
- 부칙 제5조의2항의 「영 부칙 제12조」를 「영 부칙 제13조」로 함
-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이전하는 토미콘공장은 사업장과의 시간적 접근한계 등을 고려하여 자연녹지지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6 카목)
- 계획관리지역 및 관리지역안에서 창고의 경우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도 외의 용도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별표 19 차목 및 별표 23 차목)